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상주소방서 자체감사 —

2023. 9.



#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수		감액		추징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7건	5	2	3	2,470	0	0	0	0
1	상주소방서	위험물제조소 관리 업무 소홀	1							
2	상주소방서	안전관리자 선임 지연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1							
3	상주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1		1	80				
4	상주소방서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1		1	598				
5	상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1		1	1,792				
6	상주소방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1						
7	상주소방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1						

## 2. 처분요구일람표

1. 위험물제조소 관리 업무 소홀 (시정) .....	1
2. 안전관리자 선임 지연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	3
3. 의용소방대 등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	6
4.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시정) .....	8
5.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시정) .....	10
6.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주의) .....	12
7.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	15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위험물제조소 관리 업무 소홀
소 관 청	상주소방서
관 계 부 서	AAA
내 용	

상주소방서 AAA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제조소 등<sup>1)</sup>의 용도 폐지에 관한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sup>2)</sup>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sup>3)</sup>한 때에는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9]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조소등의 폐지신고를 기한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하고서도 그에 따른 폐지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물제조소등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상주시 \*\* cde은 위험물제조소(이동탱크저

- 
- 1)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품을 취급하거나 저장(이동탱크저장소 등)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 장소
  - 2)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3) 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

장소)를 폐차하고서도 용도폐지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위험물제조소(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미신고 현황

업체	성명	주소	차량번호	폐차일자	비고
□□주유소	●●●	상주시 ---	경북00	20--.--.--.	과태료 500만원

그 결과 위험물제조소(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관리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상주소방서장은

위험물제조소 용도폐지 신고를 아니하는 등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관계인에게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안전관리자 선임 지연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소방서
관 계 부 서	BBB, CCC
내 용	

상주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지연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9]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아니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BBB에서는 [표1] 과 같이 ◇◇◇◇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현황

관계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일	신고기한 <sup>4)</sup>	신고일	신고지연일	비고
◇◇◇◇◇	20--. -. -. .	20--. -. --.	20--. -. --.	11일	과태료 30만원

##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지연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sup>5)</sup>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10]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CCC에서는 [표2]와 같이 ▼▼▼▼▼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아니하였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지연 현황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일	신고기한 <sup>6)</sup>	신고일	신고지연일	비고
▼▼▼▼▼	20--. -. -. .	20--. -. --.	20--. -. --.	3일	과태료 30만원

그 결과 위 “1”, “2”를 종합하면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미부과 되는 등 관련 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

4)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불산입

5)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아파트 등

6)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불산입

**조치할 사항 상주소방서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지연한 관계인 등에게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의용소방대 등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소방서
관 계 부 서	DDD
내 용	

상주소방서 DDD(구 dee)에서는 의용소방대원 및 119수상구조대<sup>7)</sup>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소집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수상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원된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 중인 119시민수상구조대원에게 활동수당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활동의 중복 여부를 대조하여 소집수당 등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 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 중인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 동일한 날짜, 시간에 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활동기록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소집수당 등을 중복 지급하였다.

---

7) 2019년, 2020년 운영

[표]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119시민수당구조대 활동수당 중복 지급 내역

(단위 : 원)

소속	성명	활동 중복 일시	활동수당		비고
			지급일	중복지급액 <sup>8)</sup>	
@의용소방대	1	생략			~ 활동수당 - 소집수당
@의용소방대	2	생략			~ 활동수당 - 소집수당
@의용소방대	3	생략			~ 활동수당 - 소집수당
@의용소방대	4	생략			~ 활동수당 - 소집수당
@의용소방대	5	생략			~ 활동수당 - 소집수당

그 결과 동일한 날짜, 시간에 활동이 중복되는 대원 5명에게 소집수당 등 80,430원<sup>9)</sup>이 중복으로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상주소방서장은**

중복으로 지급된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등 80,430원은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처리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8) 원단위 버림

9) 시민수당구조대 및 ~ 활동수당 중 집행일이 늦은 활동수당의 합계액(5명, 80,430원=ppp ㄷ원+qqq ㄷ원+mmm ㄷ원+nnn ㄷ원+rrr ㄷ원)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소방서
관 계 부 서	EEE
내 용	

상주소방서 EEE에서는 소방령 이하 화재진압업무 및 구조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특정업무경비로 방호활동비와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2]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등)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방호활동비 170천원, 구조구급활동비 100천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파견, 휴직 등으로 특정업무분야에 1개월 이상 근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근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는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와 같이 2021. 5월부터 2022. 6월까지 소방사 abc 등 5명이 교육 등으로 특정업무분야에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특정업무경비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646,650원<sup>10)</sup>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부적정 지급 내역

- 생략 -

10) 과다 지급 : 598,270원, 과소 지급 : 48,380원 \*원단위절사

**조치할 사항 상주소방서장은**

- ① 앞으로 특정업무경비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하여 부당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② 과지급된 방호활동비 598,270원은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시고, 미지급된 구조구급활동비 48,380원은 대상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소방서
관 계 부 서	DDD
내 용	

상주소방서 DDD(구. dee)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장학생 선발은 동일인이 고등학교 재학 시 1회, 대학교 재학 시 1회에 한하여 선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경우 장학금은 해당연도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한 고등학교 1급지 공립 일반계열 수업료 연액(936,000원) 이내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2배(1,872,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대학생인 경우 1,872,000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1회에 한하여 선발해야 한다.

그런데도 DDD에서는 2020년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선발 지급 계획에 따라 연 2회 지급으로 상반기에는 조례 개정 전 장학금액<sup>11)</sup>으로 지급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 후 장학금액<sup>12)</sup>을 반영하여 지급함이 타당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14명에게 1,792,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 11)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은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200만원 이내로 한다.
- 12)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의 해당 연도 장학금은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한 고등학교 1급지 공립 일반계열 수업료 연액 이내로 한다. 대학생의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2배까지 지급(1,872,000원)할 수 있다.

[표] 2020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과다 지급대상자 내역

(단위 :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자녀 장학생 (대학생)	지급 내역		비 고
				정당지급액	실제지급액	
합계				26,208,000	28,000,000	1,792,000원 (과다 지급)
	내용생략			1,872,000	2,000,000	
	내용생략			1,872,000	2,000,000	
	내용생략			1,872,000	2,000,000	
	내용생략			1,872,000	2,000,000	
	내용생략			1,872,000	2,000,000	
	내용생략			1,872,000	2,000,000	
	내용생략			1,872,000	2,000,000	
	내용생략			1,872,000	2,000,000	
	내용생략			1,872,000	2,000,000	
	내용생략			1,872,000	2,000,000	
	내용생략			1,872,000	2,000,000	
	내용생략			1,872,000	2,000,000	
	내용생략			1,872,000	2,000,000	
	내용생략			1,872,000	2,000,000	

※ 상주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상주소방서장은**

- ① 앞으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장학금이 부당 지급 되는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② 부당하게 지급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792,00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소 관 청 상주소방서  
관 계 부 서 EEE  
내 용

상주소방서 EEE에서는 소방청사 내 물품도난 방지 및 취약부분 보안강화를 위하여 20--. --. --. (주)SSSSS 대표 KKK와 계약하여 “□□□□□”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공사현황

(단위 : 천 원)

공 사 명	사업내용	계약금액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비고 (공정률)
□□□□□□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설치	-	20--. --. --. ~20--. --. --.	(주)SSSSS (KKK)	100%

###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사전 보안성검토 미실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19. 3.) 제14조 및 「경상북도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2015. 6. 15.)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계획 단계(사업공고 전)에서 도지사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소방서 EEE에서는 소방청사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계획 단계에서 도지사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년 --월 소방청사 내·외부에 CCTV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지 않은 채 CCTV를 설치한 사실이 있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 미실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나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소방서 EEE에서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년 --월 소방청사 내·외부에 CCTV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CCTV를 설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상주소방서장은

① 앞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로 설치할 때에는 「경상북도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아래의 관련자에게는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및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소방서  
관 계 부 서 EEE  
내 용

상주소방서 EEE에서는 소방청사 차고문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 --. --. (주)TTTTT 대표 HHH과 계약하여 “□□□□□□□□ 설치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공사현황

(단위 : 천 원)

공 사 명	사업내용	계약금액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비고 (공정률)
□□□□□□□□ 설치공사		26,400		(주)TTTTT (HHH)	1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재공고입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제3절-4에 따르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소방서 EEE에서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고, 견적서 제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재공고하거나 입찰의 방법으로 공고 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면서 단독 응찰에 의한 유찰은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고, 다른 시·도에 견적서 제출 자격을 가진 업체가 다수<sup>13)</sup> 있어 견적서 제출 대상을 경상북도에서 전국으로 완화하여 견적서 제출을 재공고하여야 함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내용

(단위 : 천 원)

계약명	공고일	기초금액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부적정 수의계약사유	견적서 제출 대상
□□□□□□□□ 설치공사	20-- . -. .			(주)TTTTT (HHH)	- 1회 유찰 - (주)TTTTT 단독 응찰	- 지역제한(경상북도) - 실적제한(♣ 제조·설치· 납품 ----천원 이상)

그 결과 수의계약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었고, 견적서 제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업체들은 견적서 제출 기회를 상실하였다.

1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업체를 조회한 결과 ♣의 경우 경상북도 1개 업체, 경기도 3개 업체, 전라남도 1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조치할 사항 상주소방서장은

①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주의)